



## 1. 외국인투자 정책

### 가. 개요

#### □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베트남은 국민경제 발전, 천연자원 개발, 노동력 및 기타 국가 잠재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29일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였으며 1988년 9월 30일에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음.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 통합 투자법 제정

— 그동안 베트남에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이 각각 존재하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표 6>

베트남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추이

연도	주요 정책 및 조치
1986	- 개인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소유권 인정 - 생산계획, 자금조달, 제품판매 등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개별 사업 단위로 이양 - 도이머이 노선 채택
1987	- 국영기업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 - 검문제 철폐, 제조업체의 해외무역 허용 등 기업의 영업영역 확대 -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8	- 외환관리법, 수출입·관세법 제정 - 국영기업의 정리와 피고용자의 해고 개념 도입 천명 - 민간기업에 대한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허용 - 은행제도 개혁(국가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1989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설치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3월) - 수출가공구 설치 발표 - 국영부문의 보조금 완전 철폐
1990	-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 『사기업법』 제정(2월) - 『회사법』 제정(12월)
1991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수출가공구 설치허용법안 통과 - 사회안정화전략 채택(제7차 전당대회) - 외환거래소 설립 : 호치민(8월), 하노이(11월) -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제시(12월)
1992	- 새로운 수출입 관세법 시행(3월) -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헌법 승인(4월) -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12월)
1993	- 토지법 개정(7월) - 파산법 시행(7월)
1994	- 외환시장 개설(10월) - 노동법 제정(11월)
1995	- 토지·내수면, 해수면에 대한 임차료 규정 및 시행령 시행(1월) - 행정위반 처벌법령(7월)
1996	- 민법 시행(7월) - 행정위반 처리 시행령(10월) -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12월)
1997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3월)
1998	-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 설치
2000	- 외국인투자법(6월)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7월) 개정 -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2002	- 노동법 개정
2006	- 투자법 개정(7월), 기업법 개정(7월)
2006	- WTO 가입(11월), APEC 개최(11월), 미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지위 부여(12월)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세계 경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위해 각종 제도 및 법안의 개정과 WTO 가입을 추진해 온 베트남 정부는 두 가지 투자법을 폐지하고 신규로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 투자법을 2006년 7월 1일, 공포하였음.
- 투자법의 주요 특징은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과 투자 대상 분야를 과거 외국인투자 금지 대상품목이었던 유통업 및 무역업에 대해서도 심사 후 승인 대상으로 하는 등 투자 대상 분야를 확대하였다는 것임.

#### 나. 투자법의 주요 내용

##### (1) 진출 기업 형태

##### □ 투자법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으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하여 적용함.
- 우선순위: 국제조약 > 특별법 > 투자법

## □ 투자 방식 구분

### ① 직접투자

-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유형은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BCC, BOT, BTO, BT 등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다양화함.(투자법 21조)
- 또한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 향상, 환경오염 방지능력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함. 직접투자의 구체적 형태는 아래와 같음.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단독 자본출자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간 합작
  - BCC, BOT, BTO, BT 계약에 의한 투자
  - 사업개발투자
  - 지분매입 혹은 자본출자를 통한 투자활동 관리 및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 ② 경제단체 및 회사 설립에 의한 투자

- 투자법 제 21조에 근거한 투자형태로서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 하는 기업,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 되는 기타 금융 단체,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기타 법 규정에 따른 각종 경제 단체들을 의미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국내투자자의 경우 상기 형태 외에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또는 조합 연합의 설립을 위한 투자 형태도 있음.

#### ③ 상호 계약에 의한 투자

— BCC 계약<sup>1)</sup> 또는 경영협력 형식의 계약체결에 의한 투자로서 이윤, 생산품 분배 목적의 생산 협력, 유전 탐사, 조사, 개발 및 자원 생산 및 분배 형식의 계약, 교통, 전력생산과 경영, 배수 시설, 폐수처리 시설, 기반시설 신축 및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 등이 있음.

#### ④ 사업개발투자

— 사업장의 확대, 매출규모 및 사업  
— 기술혁신, 품질 개선, 환경오염 축소 등

#### ⑤ 자본출자, 지분매입, 인수, 합병 형태의 투자

—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대한 자본출자 및 자본 매입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및 합병

#### ⑥ 간접투자

— 기존에는 간접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신 투자법에서는 재정지원, 회사지분 취득(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되어 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및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 기타 재무 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함.

---

1)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사업협력계약(BCC)은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xCo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사업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x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 사안별 투자 절차

- 투자 등록기간을 명시하여, 투자금액이 3,000억 VND(1,900만 달러) 미만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의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승인을 획득함.
  - 투자금액이 3,000억 VND(1,9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 승인 가능함.
- ① 최초로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행하는 국내투자자
- 기업법에 의거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음.
- ②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
- 투자법에 의거 투자절차를 밟은 후 투자승인확인서(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 받음. 동 투자승인확인서가 기업법상 사업자 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 ③ 기존 투자승인확인서를 받은 외국투자자
- 새로운 투자주체(기업)의 설립 없이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추진 시, 본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절차를 밟아야함.
  - 새로운 투자주체 설립이 수반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승인확인서(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받아 투자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현재는 투자승인확인

서가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 투자형태별 회사 설립 개요

① 100% 투자회사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는 100% 지분 소유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수행을 위해 다음 형태로 경제 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i)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된 회사를 의미함. 주주는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음. 최소 주주 수는 3인 이상이며, 최대 주주 수의 제한은 없음. 주주는 지분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가능
- ii)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이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 사원수가 50인 이하임. 사원은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사원간 투자지분은 회사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함.
- iii) 합자회사(Partnership Company) : 2명 이상의 사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을 수행하며 무한책임 사원 이외에 유한책임 사원도 둘 수 있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iv)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 개인소유 기업으로 무한 책임을 짐.
- v) 기타 투자법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투자형태

— 베트남에 기 설립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일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동 투자기업은 베트남법에 의해 법적 주체성을 갖고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즉시 활동이 가능함.

### ②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 합작투자회사

—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국내투자자와 합작으로 기업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합작회사(Partnership Company),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등을 설립 가능함.

— 합작투자 회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부터 법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설립, 운영될 수 있음.

### ③ 경영협력계약(BCC)에 의한 회사

— 경영협력계약은 투자자간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날인된 문서에 의한 투자형태로, 별도의 회사설립 없이 각 투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 조건 등을 명시함.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기타 자원 개발에 관한 경영협력계약(BCC)은 관련법 및 투자법에 의거하여 시행

— BCC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투자승인 기관에 등록돼야 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④ 자본출자, 지분매입, M&A형태 투자(투자법 시행령 제17조)

- 기업법에 의거하여 경영참여를 위해 자본금 부담,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의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는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 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음.
- 베트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베트남 기업에 대해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할 수가 없음.
- 베트남에서 기업 또는 기업의 지사를 합병, 인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말아야함.
  - 기업법상 지분 매입, 인수 및 합병 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
  - 베트남내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거나 1년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승인기관에 투자승인서 발급 이전에 충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함.
-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기업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 ⑤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형태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 투자 Share Holding Company는 기업법에 의거하여 구성, 설립된 회사를 의미함. 동사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발기 주주를 보유함. 동사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 법적 정체성을 보유함.

## ⑥ 지사, 연락사무소

- 베트남에 설립된 경제주체는 본사 이외의 지역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권리가 있음. 해외지점 또는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외 투자 규정에 따름.

## (2) 투자자의 권리

### □ 투자 보장

-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음.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함.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환전 가능한 국제 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함.

### □ 지적 재산권 보호

-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 투자자의 의무 조항 완화

-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 소득

#### □ 동일한 비용 적용

—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 기존 법률 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

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음.

—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지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함.

#### □ 분쟁 해결

— 베트남 내 투자활동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만약 분쟁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인투자자이거나 모두가 외국인 투자자일 경우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위원회
- 외국 중재위원회
- 국제 중재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 다. 투자법 시행에 따른 기업 재등록 절차

### □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에 따른 재등록

— 기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투자허가를 취득해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재등록을 안하는 경우

##### ① 기업 권한

—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에 준한 투자 인센티브 수혜, 활동 기간보장, 사업 분야의 영업 지속 및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함.

— 재등록 하지 않는 외국투자기업에서의 합작계약서 및 회사 정관 등 기타 서류는 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만약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의 적절한 조항으로 해석 될 수 있음.

##### ② 기업 의무

— 기업법에 따라 회사구조를 재구성해야 함. 기존 투자승인 조항에 더하여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의 기타 조항을 따라야 함

### ③ 회사조직 개편 필요

-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법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에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회사구조를 개편해야 함.
- 상기 시한 이내에는 재등록 거부 기업이라도 정관에 따른 회사 형태(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④ 투자허가서 수정 필요

- 회사 영업활동 기간 중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법 제170조 2(b)항<sup>2)</sup>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경우 투자허가서(투자 라이선스)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의 적절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영업활동 분야 및 영업내용
  - 영업기간
  - 투자인센티브
  - 기업 분할, 기업합병, 기업통합

#### 2) 제170조: 신규 개정 기업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 ① 1999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합작회사는 사업자 등록 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음.
- ② 본 법이 발효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본 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권리가 있다. a)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한다. 재등록은 본 법 발효 후 2년 안에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본 법에 따라 조직, 관리, 활동한다. b) 재등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은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분야와 기간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투자우대 혜택을 받음..
- ③ 경영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자산을 비상환 양도하기로 약속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이 변경이 가능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투자담당기관은 재등록 거부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 허가서(라이센스) 수정요청을 허락 할 수 있음. 투자 담당기관은 수정된 투자 허가서 첨부 없이 다음 조건 하에서 수정요청을 허락할 수 있음.
  - 적정한 지역에 거래지점, 거래 사무소, 상점, 쇼룸(생산활동 없는) 개설 및 설치
  - 투자기업 본사가 위치한 중앙행정 관할지역 내 시 또는 성에서의 사무실 주소 변경, 또는 투자지역 변경
  - 투자허가서 변경 권한은 투자등록의 일반조항에 따름.

#### ⑤ 투자허가서 수정시 필요서류

##### <기본 필요서류>

- 기업의 법적 대표자 날인 투자허가 수정 신청서
- 기업 소유주 또는 기업 소유주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투자허가 수정 결정서
- 투자허가 발급일부터 투자허가 변경 신청일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

##### <투자허가의 추가 및 보완이 요구될 경우 필요서류>

- 상기 서류에 더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투자허가 주요 사안에 대해 신청기업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a) 자본 이전 관련 사안의 경우 : 자본 이전 동의서, 합작계약서, 협력계약서, 기업정관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 법적지위, 자본 이전 양수인의 재무상태(외부인에 대한 자본 이전 경우)
  - b)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의 경우 :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 내용(내용, 지점운영 규모, 투자자본, 자재소비 등), 설립지역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설립위치, 토지 임대 등에 대한 의견서, 생산제품이 제한적이고 제품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허가가 제공된 투자프로젝트에 연관된 정부부처의 의견서 등
  - c) 투자 금액 변경의 경우 : 보완된 경제기술설명서, 투자금액 조정을 보장하는 재정 조건들, 추가 소요 기계 및 설비 명단,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3부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중 1부는 원본이어야 함. 투자승인 당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완비된 변경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함.

## (2)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 ① 등록대상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하기 외국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Joint Ventures Enterprises
  - 100% 외국투자법인
  - 2003년도 4월 15일자 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Foreign Joint Stock Companies로 전환된 Joint Venture Enterprises 및 100% 외국인 투자법인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동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투자 승인을 받았거나 신규 투자법에 따라 재등록을 완료한 협력계약에 적용됨.

② 재등록 시한 :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

③ 재등록 허가 : 사안별로 심사, 행정당국에 의해 허가

④ 투자 인센티브 유지 : 투자승인을 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등록 기업은 투자 승인에 명시된 투자인센티브 수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⑤ 재등록기업 형태

— 본 시행령에 의거한 재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음.

◦ Joint Venture Enterprise 또는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기업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재등록을 해야 함.

◦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기업법에 의거하여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해야 함.

◦ 외국인 Joint Stock Company는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Joint Stock Company로 재등록 해야 함.

— 상기에서 명시된 유형의 재등록 직후 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업명, 지사, 대표 사무소, 법적 대표자 등을 개명할 수 있음.

## 【참고】

## 재등록 제도의 문제점

- 투자법 및 기업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기존 기업들이 재등록을 할 수 있고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이사회 의결권을 주식 지분 등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적 문제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 조항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문제는 현재 약간의 지분과 사업권만 갖고도 만장일치라는 의결방법 때문에 전권을 행사하는 베트남측 합작 상대들이 재등록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이 문제임.
- 결국 기존 진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작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 경우 실권을 잃게 되는 베트남 합작 상대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재등록을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투자시한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안되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합작사를 설득해 재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새 법에는 바로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2년 이상 유한회사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유한회사의 책임자는 반드시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사람(permanent residence)이어야 한다는 조항(기업법 제46조)이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재등록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내용을 모두 공개해야만 하게 되어있어 외국기업으로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⑥ 재등록시 필요서류

- 투자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회사의 재등록 결정 증빙 서류
  - Joint Venture Enterprise의 경우 이사회 의결 내용
  -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소유주들의 재등록 결정사실 증빙서류
  - 외국인 투자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주주 연합회의 재등록 결정 사실 증빙서
- 투자 허가서 및 수정된 투자 허가서(공증 필)

⑦ 재등록 절차

- 재등록을 희망하는 외국투자회사는 투자담당 기관에 동 시행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등록 서류의 정확성과 진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사업등록 기관 및 투자 담당기관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재등록 대상자의 평가 및 투자허가서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짐. 만약 투자허가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적절한 사유를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허가발급 거절 통지문에는 발급 거절 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라. 외국인투자 사업의 형태

### □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비즈니스 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양측의 책임과 의무 및 생산물 분배는 계약에 의거 결정되며 조세 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음. 즉 베트남측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측은 외국인투자 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
- 사업협력계약은 MPI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이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MPI의 허가와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양 당사자가 계약의 기한연장에 동의했을 때에는 MPI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이전에도 사업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처리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세금, 차입금 등의 채무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함.

□ 합작투자(Joint Venture Enterprises)

- 합작투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법인(Joint Venture Enterprise)을 설립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합작기업의 위험부담 및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의 출자지분에 따름.
- 외국 측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의 최고한도는 없음. 외국 측의 법정자본금 출자형태는 외화, 공장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기계/공구, 특허권, 기술로 한정되어 있고 베트남측은 베트남화와 외화, 건설, 토지사용권 등임.
- 베트남 측으로서는 출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지의 사용권을 현물 출자함. 합작계약 전에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 측 합작파트너는 대부분이 국영기업(중앙정부 및 지역인민위원회, 공산당산하 기업)으로 사회주의 기업경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합리적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100% 단독투자기업(Enterprises with 100% Foreign Capital)

-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임. MPI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기업의 정관을 등록하면 기업이 설립됨.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자의 외국에서의 법적 자격 및 재무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서
- MPI에 신청하여 증자를 할 수 있으며 감지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 소유자가 비거주자 일 때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이 대리인을 MPI에 등록할 수 있음.

#### □ BOT 계약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양도하는 방식임.
- BOT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건설, 리조트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임.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시,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BOT 계약 유치 사업 목록을 작성·발표하고 있는데 BOT 사업의 신청창구는 중앙정부의 경우 MPI, 지방의 경우 각 인민위원회임.
- BOT 방식에 의한 진출절차는 ① 정부의 사전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② 낙찰되면 정부가 정한 BOT 실시기관과 계약체결 및 베트남내법인 설립 ③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임.
- 베트남 정부는 BOT 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표 7> 투자 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사업 협력 계약 (B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초기 투자 불필요</li> <li>•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 (이익분배, 경영방식 등)</li> <li>• 베트남 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li> <li>•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li> <li>•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li> </ul>
합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망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의 경감 가능</li> <li>• 베트남 측 파트너의 힘을 빌려, 내수시장 진입 용이</li> <li>•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 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li> <li>• 베트남 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받게 되는 경우 발생</li> <li>• 기술유출 가능성</li> <li>• 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 애로</li> <li>•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li> </ul>
단독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li> <li>• 투자이익 독점 가능</li> <li>•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 시장 진출에 제약 상존(합작형태만 허용)</li> <li>• 초기 투자부담이 큼</li> <li>• 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 구축 애로</li> </ul>

자료 : www.kotra.or.kr

- BOT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로 하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이 적용됨.
- BOT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은 BOT 계약사업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토지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임.
- 특히 투자자금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용요금(전기, 수도요금 등)의 설정에 있어 투자가의 재량권이 너무 적은데다 정부의 BOT 사업에 대한 보증조건도 불명확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 □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대표 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됨.

#### 마. 투자 우대 및 규제 조치

- 대베트남 투자는 투자 우대 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 금지분야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속하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함.



(1) 투자 우대 분야

□ 특별 투자 우대분야

-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 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식수 및 조립

-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 원양 어업
  -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교육 및 훈련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

### III. 외국인투자 환경

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 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 —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해난 구호 서비스
-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 □ 일반 투자장려분야

#### —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비철 금속, 제강
-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생 대  
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코크스, 활성탄 생산
-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전자 제품의 생산
  -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溉) 장비의 생산
  -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 약용 식물의 재배
  -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시설에 대한 투자

-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류의 생산
  -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 유류 오염 방지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 국립 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전통 분야 발전

-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투자우대 지역에서 공중 전화 연결 센터 개설
-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궤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 어린이용 완구 생산
-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 (2)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 법인세

-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세 체계는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음. 표준세율은 28%(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였으나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25%로 내려감.
- 그러나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바뀐 법인세율이 아닌 32-50% 세율을 적용(기존 세율 28-50%)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20%, 10% 로 축소됨.

— 새로운 법에서는 회사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이 법인세의 적용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외국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음.

— 10% 우대세율 적용

◦ 과세소득 발생 후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경감. 생산 개시일로부터 15년경과 후 실효.

◦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extreme socio-economic difficulties)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 에 위치하는 신설기업과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신설기업의 경우 적용. IZ(산업공단), EPZ(수출가공공단)에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신설기업.

— 20% 우대세율 적용

◦ 과세소득 발생 후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경감. 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경과 후 실효.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socio-economic difficulties)에 위치하는 신설기업의 경우.

— 우대되는 산업에 대한 20% 세율적용이 사라졌고 지역에 대한 적용만 명시. 산업공단에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과세소득 발생 후 2년간 면세, 이후 6년간 50%경감, 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경과 후 20% 우대세율 적용.



<표 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분야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표준세율 (25%)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대세율	우대세율 (I) *20% 적용 <sup>주2)</sup>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기업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II, III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li> <li>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socio economic difficult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업 (2년간 면세, 이후 6년간 50% 감세)</li> <li>제품의 50%미만 수출(제조업)</li> </ul>	
	우대세율 (II) *15% 적용 <sup>주3)</sup>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이후 7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투자장려 투자</li> <li>투자장려지역 투자</li> <li>투자기간 만료후 베트남정부에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사업</li> <li>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제품 50% 이상 수출기업</li> <li>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li> </ul>	제품의 50% 이상, 80% 미만 수출 (제조업)	모든 서비스업
	우대세율 (III) *10% 적용 <sup>주4)</sup>	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대세율(II)의 요건중 2개 충족시</li> <li>특별 투자장려 분야</li> <li>공업단지 인프라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li> <li>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li> <li>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 (extreme socio-economic difficulties)</li> </ul>	제품의 80% 이상 수출 (제조업)	모든 제조업

주 1)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허가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실효되며 25% 표준세율로 환원됨.

2) 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경과 후 실효

3) 생산 개시일로부터 12년경과 후 실효

4) 생산 개시일로부터 15년경과 후 실효

자료 : www.kotra.or.kr

- 산업에 대한 15% 우대세율은 사라졌으나 IZ의 제조업, EPZ의 서비스업은 과세소득 발생 후 2년간 면세, 이후 7년간 50% 감면, 생산 개시일로부터 12년경과 후 15% 우대세율 적용.
- 위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기간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일 경우만 연장 가능하며 기간은 30년 초과할 수 없음.
- 면세 및 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현행과 동일. 그러나 회사가 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위 면세 및 감면기간은 생산 개시한지 4차년도 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됨. 이러한 3-year rule은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 법인세법의 조항이지만 2009. 1월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산업공단법’에 따라, 수출가공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수출가공공단법’에 따라 더욱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짐.

#### □ 수출가공구에 대한 우대 조치

- 수출가공구는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가공구 내에 입주하는 모든 투자조직 및 개인은 수출물품의 제조, 하청 또는 조립생산뿐만 아니라 수송, 하역, 수리, 보험 및 은행 등의 서비스업종도 운영할 수 있음.
- 수출가공구는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는 지역으로서 수출입시 관세가 면제되거나 국내 시장 간의 상품교환은 국가 간 교역

### III. 외국인투자 환경

으로 간주하여 수출입세를 부과함. 수출가공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 정부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2001년 3월, 소프트웨어와 IT산업 전담 산업단지가 호치민시 인근 Quang Trung에 지정됨. 입주비, 인터넷 사용료, 개발보조금 등에서 특혜가 주어짐.

#### □ 산업별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법은 특정 산업의 투자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시행령에 명시된 미개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첨단기술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음.
- 2001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함.
  - 외국인투자 IT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향후 4년간 5%, 이후 10%의 법인소득세 적용.
  -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0%이상 베트남 자원 사용,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3) 외국인투자 규제 조치

#### □ 투자제한 분야(조건부 투자허가)

- 라디오, TV 방송
-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어로 활동
- 담배 제조
- 부동산 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교육, 훈련 분야
- 병원 및 진료 시설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 □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

### III. 외국인투자 환경

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 인간 복제 실험

—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국제 협정에 의해 생산이 금지된 화학 물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 투자허가 시 규제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투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섬유류 및 신발생산과 호텔, 사무실용 빌딩, 아파트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허가 지침을 발표하였음.

① 섬유류 및 신발류 생산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합작투자자와 사업협력계약 기업은 생산량의 80%, 외국단독투자기업은 90%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또 투자유형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함.
- 도입하는 중고기계 및 설비는 신품과 비교 8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단, 운송장비는 신제품이어야 함.
- 부지 내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을 베트남 측 투자선, 외국 측 또는 설립법인 누가 지급하든 법정자본금으로 인정하나 베트남 측 투자선이 출자한 토지사용권과 정부에 내는 토지임차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호텔, 사무용빌딩, 아파트 건설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호텔은 3스타급 이상의 건축에 한함.
- 합작호텔은 외국의 호텔경영회사에 경영을 위임할 수 있으나 상표 사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 경영 서비스료가 매출액의 3% 또는 세전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영위임기간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 인민위원회 토지사용면적 및 임차료에 관한 추천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은 법정자본금으로 간주함.

□ 환경규제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설립 신청서중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에 환경보호대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설립허가서는 그 영업의 본거지가 있는 현 내지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발급함으로써, 이들 지방인민위원회가 기업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평가하게 됨. 지방 인민위원회는 환경보호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허가 불허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음.
- 토지법에서는 해변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므로 토지사용자에게 특별히 환경보호의무를 부과하며(토지법 제48조), 시내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베트남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발전단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시행을 보류중임. 그러나 공단입주기업 선정 시 피혁산업, 염색산업 등 공해관련 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베트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2. 외국인투자여건

### 가.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

#### (1) 수출입 허가

- 외국기업은 수출입허가를 받은 베트남 기업만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음. 특정기업이 특정 품목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수입은 수입관세, 수입수량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으로 규제수준이 상당히 높음.
-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 중고소비재, 무기 및 탄약류, 중독약품, 유해 화학물, 담배 등.
-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2014년까지 관세 평균을 13.4%까지 낮춰야 하며 이외에 무역 및 무역외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 관세제도

##### □ 개 요

- 외국기업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수출입관세가 부과되나 합작기업이나 BCC 사업을 위해 자본으로 출자되는 기계장



### III. 외국인투자 환경

비, 설비, 부속품, 사업용 설비 등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 부속품 등 기타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됨.

- 그러나 이들이 베트남 국내 시장으로 양도·판매될 때는 관세 및 매출세가 부과됨.

#### □ 부과대상

- 정부의 허가를 얻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증가세임.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 적은 베트남화를 기준으로 함.

#### □ 관세의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인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적인 수출,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

#### □ 관세의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 장려가 필요한 경우 관세를 환급함.
-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베트남은 2006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에 참여하였으며,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에 따라 1,600개 품목에 대해 0—5%까지 관세를 인하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되었을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3) 외환관리제도

#### □ 외환통제

- 1994년 10월 이후 외국환의 거래가 외국환은행간 시장(foreign currency interbank market)을 통해 허용됨.
- 1999년 2월에는 하루 최대 환율 변동폭을 전일 은행 간 거래환율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를 도입하여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고 점진적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
- 현재의 외환관련 규제는 2005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06년 6월 1일 실시된 외환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베트남 내 환율은 중앙은행이 전일의 은행 간 거래 환율을 평균하여 매일 고시하는 시장평균환율, 중앙은행 규제범위 내에서 개별 은행이 고시하는 은행 대고객 환율, 거리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시장환율 등이 존재함.
- 정부는 또한 지역 경제의 ‘달러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dong화를 달러로 교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그 자금의 출처를 밝

### III. 외국인투자 환경

히도록 하고 있음.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무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과 외국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현지통화나 외화로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예치금을 현지 통화로 교환할 수는 있으나 현지통화 예치금을 외화로 교환할 수 없음.

#### □ 외환업무 관련 유의사항

- 베트남 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외화로 영수하였을 경우 과거에는 일정비율을 바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고 수취한 외화를 계좌에 보유할 수 있음.
- 기업이 해외로부터 장기 차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함. 특히 본사 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함.
-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경화(hard currency) 환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환투자기업은 베트남 내 본점 소재지 지역의 외국환 은행에 자본금 계좌(Capital Account)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서만 자본금, 역외차입원리금, 과실송금대전 등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외화 현찰은 자금출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함. 개인의 경우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외화 소득이 있거나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입금이 가능함.

## □ 국외송금

- 베트남으로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베트남에 송금된 외화는 dong화로 환전하거나 외화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 합작경영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 급여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화로 국외 송금할 수 있음.
- 모든 송금은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의 계좌를 통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청산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투자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 나. 조세 제도

### (1) 법인소득세

## □ 개 요

- 2004년 개정된 베트남 법인세법은 신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용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됨.(<표 8> 참조)
-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은 아래의 세금과 관련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법인세
- 원천징수세
- 자본양도이득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개인소득세
- 종업원에 대한 사회안전과 보험세

#### ① 거주자

- 투자인가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베트남인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외국인파트너도 납세의무자가 됨.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도 법인세제도에 도입되었으나 그 법인세법상 지위는 투자 승인 과정에서 결정되며 거주자여부는 외환통제 및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련됨.

#### ②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 - 총 공제가능 비용 - 기타 과세가능소득 - 이월결손금(5년)
  - 과세소득이라 함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총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총수입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과 자본거래 수입도 포함하며 이월결손금은 5년까지 인정됨.

- 재고평가 : 현재는 재고평가나 재고흐름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세무처리는 회계처리를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은 베트남회계준칙(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을 따름.
- 양도차익 : 양도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됨.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 면허기업(Vietnam-licensed enterprise)에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28%의 표준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됨.
- 회사 간 배당 : 회사 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외국소득 : 베트남 원천소득만이 베트남투자업체의 장부에 기록되기 쉬우나, 베트남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베트남 세법체계 하에서 외국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됨.

### ③ 비 용

—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제 가능함. 예를 들면 제조원가, 임금과 급여, 판매관리비, 사업에 이용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 보험료, 지급이자, 전기이월손실, 기술자료 이용권 획득비용, 특허권(일정 제한이 있음) 및 총 지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비용(보너스, 광고비용, 접대비 등) 등임.

(a) 감가상각 및 감모 : 2004년 1월부터 세무상 상각은 회계상 상각과 달라졌는데, 세무상 상각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은 공제되지 않음. 동 규정은 무형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대 및 최소 내용연수

### III. 외국인투자 환경

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허용 가능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빌딩(2-4%), 사무실 비품(10-20%), 자동차(10-16.66%),  
기계장치( 3.33-6.66%)

(b) 운영업손실 : 손실은 5년간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 공제  
(Carryback)는 허용되지 않음.

(c) 외국관계회사에의 지급 : 외국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및  
용역대가의 공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이전관련  
규정은 로열티 지급률 및 다른 기술이전 대가에 대해 일정 제  
한을 두고 있음.

#### ④ 조세감면

—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특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됨.

#### ⑤ 이중과세방지협정

— 베트남은 1992. 4. 13. 호주와 처음으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  
결한 이래 가장 최근에는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Circular 133  
에 의거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및  
한국 등 현재까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47개국임.

#### ⑥ 지점 및 자회사

— 외국법인의 지점은 베트남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나 많은 제  
한이 있으며 적용세율은 28%임.

⑦ 원천징수세

- (a) 사용료 등 : 지적재산에 대한 지급으로 여겨지는 것들(베트남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또는 기술적 비밀)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임.
- (b) 이자 : 1999년 1월에 이자에 대한 10% 원천징수가 도입되었고 1998.12.31이후에 서명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나 특정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외로부터의 차입(Offshore Loan)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어 동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음.
- (c)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Payments to Foreign Contractors)
  -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베트남 측 일방이 베트남 내에서 허가된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회계시스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당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 회계장부가 적합할 경우 외국계약자는 법인세를 실질소득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베트남 회계제도 등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는 계약일방에 의해 과세대상 총 거래액의 인정 비율로 원천 징수되는데, 이행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율이 정해져 있음.
- 법인세의 경우 원천 징수율이 1~10%이고 부가가치세는 실효 원천 징수율이 1~10%임. 계약일방에 의해 원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그 일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이 됨.
- 한 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일부에 대한 하청을 줄 경우, 동 하청계약자가 하청계약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세대상 총 거래액은 하청계약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음.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할 의무는 계약의 베트남 측 일방에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조세조약상의 감면이 적용되기도 함.

<표 9> 부가가치세율 및 법인세율

사업 활동	실효 부가가치세율	인정 법인세율
재화의 거래(물, 음식, 식료품, 석유계약자로의 필수품 및 화학물질 포함)	1	1
용역(서비스)	5	5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 없는 설치, 탐사, 의장, 감독	5	2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을 수반한 설치	3	2
기타 제조 및 운송	2.5	2
해외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면제	10
로열티	면제	10

⑧ 국경 간 리스

- 베트남 측 임차인(Lessee)은 해외의 임대인(Lessor)에 리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 징수율은 10%로, 이는 인정법인세율 5% 및 부가가치세 5%로 구성됨.

⑨ 법인세 납부

(a) 실질과세의 경우

- 법인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매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하여 매분기가 종료된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제출되는 잠정신고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서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협력계약인 경우 법인세는 2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잔여기간의 반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세금을 정산함.
- 세금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0.1%/일의 지연료를 부과하며 자본금의 25%에 달할 때까지 세후이익의 5%를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b) 인정과세의 경우

- 기성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발주처가 납부하는데,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동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개인소득세

□ 거주자 판정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 동안 183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20%의 고정세율로 과세됨.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목적상 영구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5%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2004. 7. 1.이전의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에 30일 미만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동 면제규정은 2004. 7. 1.이후에 삭제됨.

□ 과세연도

- 정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소득세 납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매월 한 번씩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도 말에 납세자는 확정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소득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과세가 되며 비정규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세금계산, 원천징수를 위하여 세무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 과세대상소득의 유형

### ① 정규소득

-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 이사회에 참가에 따른 소득수취분
- 작가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
- 수수료와 중개용역, 스포츠 활동에 의한 용역, 디자인 용역, 컨설팅 용역 등에 속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소득

### ② 비정규소득

- 외국기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송된 현금 및 현물 (발송이유를 불문). 단, 해외거주자로부터 선물이나 기부물품을 현물로 받은 경우 2004년부터 비정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기술이전,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 복권당첨금

### ③ 스톡옵션

-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소득은 정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되며 과세되는 금액은 행사일의 시장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이 분을 적용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④ 비과세대상소득

- 업무추진비, 여비, 특근비, 유해·위험수당, 벽지수당, 발명 및 창작 등에 대한 상금
- 퇴직보조금, 휴직보조금
- 소득세를 납부한 자영업기업주의 이자소득

#### ⑤ 소득공제

- 가수, 배우, 축구선수, 프로선수 등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25%를 공제해 줌.

#### ⑥ 외국세액공제

- 베트남 시민, 베트남 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 세 율

#### ① 정규소득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 및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개인소득세법(PIT)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달랐던 개인소득세율 구별을 폐지함.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0%를 납부해야 함.

<표 10> 통합된 개인소득세율

월간소득(VAD)	세율	연간소득(VAD)
0 - 5,000,000	5%	0 - 60,000,000
5,000,001 - 10,000,000	10%	60,000,001 - 120,000,000
10,000,001 - 18,000,000	15%	120,000,001 - 216,000,000
18,000,001 - 32,000,000	20%	216,000,001 - 384,000,000
32,000,001 - 52,000,000	25%	384,000,000 - 624,000,000
52,000,001 - 80,000,000	30%	624,000,000 - 960,000,000
80,000,001 이상	35%	960,000,000 이상

## ② 비정규소득

- 지급건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 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며,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됨.

## ③ 독립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④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함.
- 베트남 정부는 고용인은 18%, 피고용인은 8%가 될 때까지 사회보험료를 증가할 예정이며 실업보험기금에 고용인, 피고용인은 급여의 1%를 납부해야 함.
- 의료보험 납부율은 고용인 2%, 피고용인 1% 등임.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개 요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 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며, 표준세율은 10%이고 이외에 0%(수출품), 5%(비료, 식품, 석탄 등 필수품) 등의 세율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까지의 거래세(Turnover tax)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
- 2008년 6월 베트남 국회는 새로운 부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새로운 부가세법에서는 기존의 28개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이 25개 그룹으로 변경되었고 서비스 부분의 면세가 확대됨.

####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가 납세의무자임.
- 생산, 통상 및 용역의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 활동 및 수입재화의 관세포함 가격 등에 적용됨.
-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새로운 법에서는 법인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해야 함.

#### □ 부가세 면제되는 품목

- 미가공 농산물,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
- 교육 및 직업훈련, 기술이전
- 신용서비스, 건강관련 서비스
- 미제련 상태로 베트남 국외로 수출되는 몇몇 천연자원 제품
- 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와 같은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와 중개업, 주식 인수, 투자 컨설팅,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서비스
- 토지사용권 양도
-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 재화를 위해 사용되는 고정자산 대한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되며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매입거래 발생 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능했던 공제를 6개월로 연장함.

#### □ 세 율

- 재화와 용역의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0%, 5% 및 10%(표준율)이며 광범위한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 ① 제조·가공 재화 및 용역의 수출 : 0%

- 수출재화(수출가공공단으로의 판매 포함) 또는 직접 수출업자를 위해 가공되는 재화, 수출 소프트웨어 용역, 노동수출 용역 등
- 베트남 국외 국제운송과 관련 직접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면세 대상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함.

##### ② 농업, 의료장비,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 5%

- 필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즉, 물, 비료생산, 학습기구, 종이, 아동용 도서, 식료품, 의약품 및 의학 장비 등

##### ③ 대부분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 10%

- 표준율로서 0%, 5%, 면제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다른 활동에 적용

-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말까지 10% 부과세가 적용되는 몇몇 품목의 50%를 감면하기로 함.

#### □ 신고 및 납부기한

- 납세자는 익월 10일까지 월별 신고하고 신고서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행함.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말에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함.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 및 정산은 익년 60일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 납부방법

-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액공제법(tax deduction method)은 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공제법(direct calculation method)은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됨.

#### (4) 특별판매세

#### □ 납세의무자

- 특별판매세(special sales tax)는 알코올, 수입자동차, 석유, 담배, 카드,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잭팟, 골프장, 도박오락

시설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과되며, 재화의 경우 생산 또는 수입단계에서만 부과됨.

□ 세 율

— 특별판매세율은 10%~80%로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판매세 과세대상인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됨. 잠정적인 특별판매세 감면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자동차조립업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5) 인지세

— 인지세(stamp tax)는 주택, 차량, 모터사이클, 보트, 선박 등의 자산 소유권 이전에 납부하며 과표는 시가로 하고, 세율은 5%임.

(6) 천연자원개발세

— 천연자원개발세(natural resource tax)는 석유 및 가스, 기타 광물, 삼림, 수산업, 특히 천연수와 같은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사업 형태에 따라 결정됨.

<표 11>

천연자원개발세율

사업의 형태	세율(%)
철 광 산	2 ~ 5
비 철 광 산	1 ~ 8
금	2 ~ 3
원 유	6 ~ 25
가 스	0 ~ 10
산 림	5 ~ 40
수 산 물	2 ~ 10
천 연 가 스	0 ~ 4
기 타	10 ~ 20

다. 노동 및 기타

(1) 노동문제

□ 개요

— 노동가능 인구가 연평균 2.5%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는 베트남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010년에는 노동가능 인구가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관련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은 1994년 제정 노동법(Labor Code: 1995년 발효)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15세 미만의 베트남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베트남인을 고용할 때에는 우선 고용알선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고용알선기관이 15일 이내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직접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 모든 노동조합은 베트남 노동연합(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산하에 있음.
- 노동법은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 전에 중재절차를 거칠 것과 파업 3일전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공익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파업이 금지되며, 전기, 수도, 체신 및 통신, 대중교통, 은행, 해상 및 항공 운송, 원유 추출, 연료, 국방 및 안보 분야 등이 해당됨.
- 고용계약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서면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노동계약서에는 직무규율, 근무지, 근무시간, 휴일, 임금, 계약서의 유효기간 등을 명기해야 함.

#### □ 임 금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하노이 및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월 870,000동(약 55달러), Haiphong, Ba Ria-Vung Tau, Danang, Binh Duong, Hue 지역은 월 790,000동(약 50달러), 기타지역은 월 710,000동(약 45달러)이었음.

- 베트남 정부는 2009년 1월 최저임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20%, 현지 기업은 평균 25% 각각 인상함.
  -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며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의 경우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대도시는 월 120만동(약 72.6달러), 호치민, 하노이 외곽도시와 하이퐁시내는 108만동(약 65.4달러), 하노이 기타지역, 하이퐁 기타지역 등은 95만동(약 57.5달러), 그 외 지역은 92만동(약 55.7달러)으로 인상됨.
-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70%만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전문직은 60일, 기타 직종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인당 인건비에는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15%와 노동조합비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2%가 추가됨. 도심지 공장을 제외한 노동집약형 공장에서는 점심을 회사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초과근무수당은 통상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 200%, 야근 수당은 130% 혹은 135%임.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원칙적으로 주 48시간, 일 8시간 범위 내
  - 고용주는 노동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휴식시간

- 8시간 연속작업 근로자는 작업 중 최소한 30분 동안 휴식
- 야간근무자는 작업 중 최소한 45분간 휴식
- 교대근무자는 다음 작업 시작 전까지 12시간 이상 휴식

— 유급휴가

- 양력설, 음력설, 전승일, 국제노동절,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 상  
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익일 휴무
-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정상 근무상황 : 연 12일
  - 힘들고 유독한 작업장 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근로자, 18  
세 이하 근로자 : 연 14일
  - 작업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경우 : 연 16일
  - 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함.

□ 근로 계약의 종료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 20일 혹은 월  
7일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의 병치료, 자연재해로 인한 업  
무축소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음.
-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한 해고통지는 무기한 고용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45일 전에, 1~3년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0일  
전에, 1년 이하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일전에 해야 함.

- 업무축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집행부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기관에 통지하여 30일후 해고할 수 있음. 근로자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처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인을 고용해야 하나, 적합한 노동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 1999년 12월 발효되고 2000년 3월 재확인된 법률(Circular 08/2000/TT-BLDTB)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요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3년 제한이 철폐되고, 노동허가서의 발급여부도 45일에서 단축된 15일로 규정됨.

### (2) 투자 지역

#### □ 투자 지역의 선정

-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임.



- 현지의 일반적인 진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출지역을 모색하는 것은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남부와 북부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 등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회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받아 남부인들은 개방적 낙천적, 북부인들은 인내심과 조직 순응력이 강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지역 선정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은 진출희망지로 남부지역 보다 북부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베트남 내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면 시장규모가 큰 호치민 인근의 남부지역이 단연 유리함. 그러나 노동집약적 부문은 수출지향적인 투자라면 토지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할뿐더러 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북부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입지

- 투자입지의 유형은 크게 대별하여 공업단지와 일반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투자분야에 따라 각 입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베트남에는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업단지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입주에 따라는 법인세 등 우대조치가 주어지고 있음.

- 공단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 관리위원회가 인허가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 입주와 기업운영에 편리한 점이 많으나,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법인세 우대혜택 등에 있어 공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지방인민위원회와의 협상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공단 입주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관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우리 진출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집약형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측면에서 공단보다는 일반지역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참고】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 EPZ)**

□ 개 요

- 수출가공구(Special Export Zone : EPZ)는 수출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한 곳임.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보세가공지역이며 수출가공구 기업이란 수출가공구내에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을 말함.
- 수출가공구 기업에게는 수출의무가 부과되지만 EPZ내로의 원료, 기계, 장비 등의 반입에는 수입관세가 없으며 수출품 역시 수출세가 면제됨. E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입주조건

- 수출가공구내에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 사업협력계약 등의 어느 경우라도 입주할 수 있으나 가공구내의 법인격 획득이 필요함.
- 수출가공구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구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특혜조건

- 법인세 감면
  - 제조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4년간 면세 후 10% 부과
  - 서비스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2년간 면세 후 15% 부과
- EPZ안에서 사회기간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업체는 제세공과금을 영업허가서 조건에 따라 납부
-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 시 수입세, 수출세 부과(무역으로 간주)